(재)나주교육진홍재단 규정 제 9 호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

제11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임원으로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재단 규정 제10호 사무국직원 인사 및 채용.보수규정

(재)나주교육진홍재단 규정 제 10 호 사무국직원 인사 및 채용. 보수 규정

제6조 (채용인사심사) '채용인사위원회'를 6명(외부인사 1/2 포함)으로 구성하여 채용인사규정안을 상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문(나주지역신문 위주)·방송이나 인터넷(나주시청 및 재단홈페이지) 등에 공개 채용의 광고를 하여 공고하고, 응시자의 채용접수 후 '채용인사위원회'를 소집하여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다면 평가를 통해 채용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합한 사람을 이사장이 채용한다.

제9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- 1. 피성견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직원으로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제10조 (보수)

- ④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매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한다. 단, 성과급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.
 - 1.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(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)을 받은 자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83조의2제1항(금품수수, 향응수수, 횡령)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
 - 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추행, 간음 등)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
- 5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(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 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)
- 6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)에 따른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

○재단 규정 제12호 외래강사 운영 규정

(재)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 12 호 외래강사 운영 규정

제5조 (강사 모집) 강사의 모집은 재단 사업별 계획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 추진 성격 상 부득이한 경우는 내부 계획에 의거하여 모집할 수 있다. 제6조 (강사 채용 심의) ① 강사의 채용 결정은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심의과정을 거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강사 채용 심의위원회 구성은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 제7조 (강사 계약) ① 강사의 계약은 재단 사업별 계획에 따른 강사채용 계약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통해 계약이 성립된다.
 - ② 강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시행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○청렴계약 이행 서약서

청렴계약 이행 서약서

사업명: 0 0 0

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, (재)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주최하는 '〇 〇 〇' 운영 계약과 관련, 당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서 약 내용

- 1.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, 계약에서부터 사업 운용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사항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.
- 2. 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, 향응 등의 뇌물이나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자에게 위법 부당한 청탁 (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제공 포함)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3. 위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

지킬 것이며,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재단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(용역, 물품제조, 구매 등)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, 이에 대한 민·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계약일: 년 월 일

서약자 상호:○○○

성명 : 대표자 ○ ○ ○ (인)

(재)나주교육진흥재단 귀하